

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16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. 4. 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4. 4. 3.

다. 상정일자 :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4. 4. 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장애인사회보장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,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① 위탁사무명: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
- ②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및 제81조(비용보조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○ 추진 필요성

-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자활기반 조성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.

③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관리

-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-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④ 위탁시설 개요

○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센터장	설치 일자
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	매봉산로18, 마포창업복지관 2층	하강택	2008.12.31.

- 건물규모: 지하1층/지상6층(지상1층 일부 및 지상2층 사용)
- 면 적: 404.95㎡(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용 면적)

- 층별현황

층별	용도	면적(㎡)	비고
계		404.95	마포창업복지관 연면적 7,039.04㎡
2층	제과제빵 제조실, 작업활동실, 사무실, 원장실 등	325.97	
1층	프로그램실, 샤워실(남·여), 전실 및 창고 등	78.98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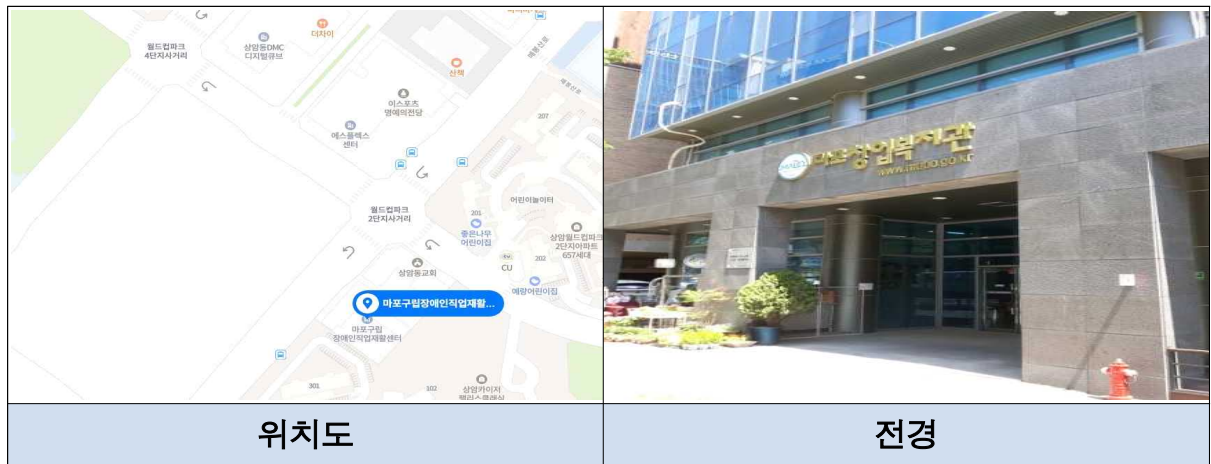
○ 인력현황

시설명	계	센터장	과장	팀장	기타
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	7	1	1	1	직업훈련교사: 2 사무원:1 생산관리기사:1

※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2019. 9. 1.~2024. 8. 31.(최초위탁일: 2008.12.31.)
- 위탁법인: 학교법인 이화학당

○ 위치도 및 전경



위치도

전경

⑤ 민간위탁기간: 2024. 9. 1.~ 2029. 8. 31.(5년)

⑥ 선정방식: 공개 모집

⑦ 소요예산

○ 소요예산 : 389,587천원

○ 산출근거

시설명	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	389,587		
마포구립 장애인 직업재활 센터	인건비 운영비 사업비	389,587천원	- 시비 377,587천원 - 구비 12,000천원	시비 96% 구비 4%

⑧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장애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·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고자 함

⑨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서울시)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
- 추진일정안
 - '24. 5월 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
 - '24. 6월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
 - '24. 7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 - '24. 9월 : 위탁 운영 개시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1) 제출경위

- 본 동의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2) 적정성 검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
- 장애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돌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본 위탁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

도 충족하는 바, 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참 고 자 료

1. 관련법령

「장애인복지법」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제81조(비용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

3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5.6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>